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PILZ Korea Ltd.]
일반거래조건
2018년 4월 1일부터 유효

1. 본 계약의 목적사항

본 일반거래조건은 PILZ의 별도 일반거래조건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필즈코리아 유한회사](이하 "PILZ")의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별도 일반거래조건은 이하에 기재된 PILZ 제품에 적용됩니다.
- 표준 소프트웨어 제품: PAS 4000 을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판매에 관한 일반거래조건이 적용됩니다.
- PAS 4000 제품: 'PAS 4000 제품에 관한 일반거래조건'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PILZ는 서비스 수행(서비스에 관한 일반거래조건'을 적용) 또는 작업 수행(작업 수행에 관한 일반거래조건'을 적용)에 대하여 별도 일반거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일반/범위

(1) 본 일반거래조건은 PILZ의 다른 일반거래조건이 추후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한 개별 진마다 PILZ가 고객에게 언급할 필요 없이 현재와 (일반계약에 의해) 미래의 PILZ와 고객간의 모든 사업 관계에 적용됩니다.

(2) 견적 및 주문수락 선언과 모든 서비스 및 물품은 이하에 기재된 일반거래조건(각 경우, 최신버전)에 따라서만 제공됩니다. 본 일반거래조건은 언제든지 인터넷(<http://www.pilz.com/en-INT/termsandconditions/>), [PILZ AGB EN.pdf] 에서 자유롭게 조사가 가능하며, 고객은 복제가능한 형식으로 저장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의 구매조건은 이에 명시적으로 거절됩니다. 고객이 이와 상이하거나 상충하거나 추가적인 일반거래조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일반거래조건은 PILZ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체결시 PILZ가 시면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확인요건은 고객이 그와 상충하거나 상이한 일반거래조건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PILZ가 완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에 대하여 아무런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고 물품을 공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계약체결시 제공한 시면 동의는 개별 진마다 당해 계약에서 규율되는 개별 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4) PILZ의 일반거래조건은 고객이 기업, 공법상 법인 또는 공공 자급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 계약의 성립

(1) PILZ의 견적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E-Shop에서 PILZ가 행한 견적은 고객이 PILZ에게 물품을 주문하도록 하는 구속력 없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 주문은 <http://www.pilz.com/en-INT/e-shop>을 통하여 E-Shop에서 PILZ에게 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오프라인 주문이 계약 체결에 대한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 PILZ는 고객의 주문서에 달리 기재되지 않는 한 4주 내에 주문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PILZ E-shop에서 "주문" 버튼을 클릭하는 등 주문을 함으로써, 당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구매제안서를 제출합니다. PILZ는 이러한 주문수령 사실을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이러한 수령 사실 확인은 계약의 성립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고객과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PILZ는 고객으로부터 구속력 있는 구매제안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문확인서를 전송함으로써 이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의 내용은 PILZ에 의해 저장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개별적인 사용양식에 따라 모든 기술적인 관련 요인을 고려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행한 주문에 구매할 제품의 개별 명세를 기재하거나 완전한 양식으로 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PILZ의 일반 제품 명세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3) 주문수락 사실은 주문확인서(팩시밀리와 이메일을 포함함)에 의하여 시면으로 또는 고객에게 당해 물품을 선적함으로써 선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객은 시면으로 된 주문확인서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달리 서면 계약이 없는 경우, PILZ의 서면 주문확인서가 계약상 이행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4) 계약 체결시 어떠한 구두 부속 계약도 없습니다. 고객과 PILZ 간에 수시로 명시적으로 체결된 개별 계약(본 일반거래조건에 대한 부속 계약, 추가 및 변경을 포함함)은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체결된 경우 언제든지 본 일반거래조건에 우선합니다. 시면 계약 또는 -서면 계약이 없는 경우 -PILZ가 고객에게 제공한 확인서가 당해 개별 계약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5) 당사는 고객에게 합당한 범위 내에서 인도물의 형태, 색상 및/또는 중량의 변경뿐 만 아니라, 기술적인 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6) 보증은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PILZ 경영진이 시면으로 선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인도할 물품의 특성은 각 계약 체결 당시 PILZ 제품 명세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기술 데이터, 명세, 일러스트레이션, 도면, 측정 결과 및 중량 등 기타 정보는 (기준을 참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PILZ는 PILZ가 사전에 구속력 있다고 확인한 정보에 의해서만 구속됩니다.

(7) PILZ는 일체의 일러스트레이션, 도면, 초안, 모델, 샘플, 계산, 추정, 기타 문서 및 물건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정보는 PILZ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4. 인도

(1) 고객에게 합당한 범위 내에서 분할선적이 허용됩니다.

(2) PILZ와 고객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Incoterms 2010에서 규정한 "공장인도가격조건(ex works)"이 적용됩니다. 인도장소는 인도 및 시정조치의 이행장소입니다. [BKL NOTE: 위 문구를 추가한 위치가 불명확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공장인도가격조건(EX WORKS)"은 매도인의 공장(영업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한 상태로 물 매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되는 것으로 보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서는 인도장소가 인도 및 시정조치의 이행장소라고 규정하여 그 위치가 무엇인지 불명확합니다. 특히, 제 13(2)조의 추가 내용에서는 시정조치의 이행장소가 인도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항과 순환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도 위 문구 및 제 13(2)조의 문구를 추가한 위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문구를 추가한 담당자의 의사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3) 고객은 물품의 수물 및 수인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수행할 책임을 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PILZ는 고객이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인도물은 한국, 미국 또는 유럽연합 등의 (재)수출 제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객은 당해 물품이 제관매되거나 달리 수출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경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인도일과 인도기한은 항상 군사치에 불과하며, 당해 계약 체결 시 명시적으로 구속력 있는 것으로 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PILZ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인도기한 또는 인도일은 당해 물품이 인도기한 또는 인도일 내에 PILZ 공장을 떠났거나 또는 고객이 PILZ로부터 물품이 선적될 준비가

되었음을 인도기한 내에 통보 받은 경우에 충족됩니다. PILZ가 지정한 인도기간 초에 일체의 기술적 문의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제공되고 고객의 의무가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행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도면, 명세, 고객이 받아야 할 허가 또는 승인, PILZ와 합의에 따라 PILZ 계약에 입금된 선금금 증빙 등 고객이 입수 또는 교부해야 할 일체의 서류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어는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고객에게 책임이 있고 고객의 설명을 기다려야 하는 문의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 PILZ가 지정한 인도기간은 고객이 미결 상황을 해소 또는 제거하는 시점까지 연기되며, 인도기한은 지연된 기간 만큼 연장됩니다.

(5) 고객이 계약 체결 후 계약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인도기한 또는 인도기간의 충족을 불가능하게 하는 고객 특성의 인도물 변경), 그러한 변경 및 추가 요구에 따라 인도일이 연기되거나, 인도기한이 연장됩니다.

(6) 이행이 납품업체에 의해 정확하게 그리고 적시에 인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이에 따라, PILZ는 비록 이전에 당해 납품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자신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인도 의무로부터 면제됩니다. PILZ는 고객에게 납품업체가 PILZ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따라, PILZ는 당해 계약을 철회한다는 사실 및 고객이 기지급한 대금을 즉시 환불할 것이라는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7) 고객은 계약상 합의사항과 경미한 차이가 있거나 또는 경미한 사용상의 불변이 있는 인도물을 인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8) 선적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선적경로와 방법을 PILZ의 제량에 따라 선택합니다. 운송보험은 고객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의 비용으로 가입됩니다.

(9) 인도기간 동안, PILZ는 기술적 개선 및/또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디자인 또는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러한 변경은 인도물 또는 인도 관련 합의사항을 중대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고객이 수락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5. 주문의 취소

주문의 취소는 기존에 합의된 일정 또는 합의된 기한 내에서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물품이 취소되지 않고 이에 따라 고객이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 인도물의 우발적인 손실 및 악화의 위험은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정해진 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고객은 PILZ에서 당해 물품을 보관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하나, 그러한 비용은 매월 총 공급금액의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6. 대금 및 결제조건

(1)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대금은 Incoterms 2010에 따라 "공장인도가격조건(ex works)"이 적용되며, 대금에는 공장 내 적제비용이 포함되지만, 포장비, 운송비 및 운송보험비와 법정 부가가치세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대금은 한국 내에서의 인도 및 수행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공급될 모든 물품의 대금은 주문확인일을 기준으로 PILZ에서 유효한 정할 가격으로 정합니다.

(3) PILZ는 분할 선적인 경우 분할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조건은 각 청구서에 대해 별도로 적용됩니다.

(4) 할인은 구체적인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제공됩니다.

(5) 주문확인서/견적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 전) 순 대금은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제해야 합니다. 고객이 지급을 ~~XXXXX~~는 경우, PILZ는 연체된 대금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연 8%를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PILZ는 그러한 지급불이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실이 그 보다 더 큰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고객은 실제 손실 금액이 그 보다 적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6)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고객의 재무 상태가 중대하게 악화되었거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PILZ가 고객의 재무상태가 이미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로 인하여 고객의 신용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경우 PILZ는 당사의 선택에 따라 선금 혹은 지급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PILZ는 고객이 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7. 유지권/상계

(1) 고객이 PILZ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대금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그러한 유지권에 대해 다툼이 없거나 고객의 최후적이고 절대적인 채권에 기초한 경우가 아닌 한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고객의 매출채권으로 PILZ의 매출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고객의 채권이 PILZ와 동일한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될 수 없습니다.

8. 불가항력

특히 파업 및 직장폐쇄를 포함한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치, 기타 PILZ의 귀책사유가 아닌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러한 상황이 인도물의 완성 또는 선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절한 범위의 내에서 인도일은 연기되고 인도기간은 연장됩니다. 전술한 상황이 기존에 인도가 지연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PILZ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PILZ는 그러한 상황의 시작과 종료에 관한 사항을 3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9. 위험의 이전

(1) 인도물의 우발적인 손실 및 악화의 위험은 인도물이 PILZ의 사업장을 떠났거나 PILZ가 선적 준비가 되었음을 통지하는 즉시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2) 고객이 인도물의 인수를 불이행할 경우, 이는 물품 인도로 간주됩니다.

(3) 계약목적물의 선적이 고객이 책임을 지야 할 상황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위험은 선적 준비 통지서 발행일부터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4) PILZ가 인도물의 선적, 인도 또는 설치 비용을 부담하기로 계약상 합의한 경우, 이는 위험 이전에 관한 상기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상기 규정은 분할선적에 합의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10. 불이행 및 이행불능

(1) PILZ가 단순 과실로 인하여 인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고객은 당해 불이행이 지속되는 주 또는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그 주 일부에 대하여 불이행으로 인하여 커미셔널할 수 없는 물품 대금의 0.5%에 달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금액은 대금 총액의 5% 이하 이어야 합니다. 고객은 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보다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권리를 가지며, PILZ 는 고객에게 그 보다 적은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2) 하자로 인한 고객의 철회권(본 일반거래조건 제 13 조 보증 및 제 14 조 소유권 하자 참조)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오로지 PILZ 가 직무태만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 PILZ 의 이행불능 또는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불이행의 경우, 이행을 대신한 계약철회 또는 손해배상은 먼저 고객이 계약에 따른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2주 이상의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기한(이행거절에 대한 경고와 함께 기한설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당해 계약을 철회하고 및/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서면 통지를 PILZ 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전술한 기한이 경과한 후, 고객은 PILZ 의 요청에 따라, 계속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할지, 계속 이행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당해 계약을 철회할 것인지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이 PILZ 가 정한 적절한 기간 내에 전술한 바와 같이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더 이상 이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갖지 아니하며, 또한 계약 이행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단지 이행을 수락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4) 이행거절 경고와 함께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PILZ 가 인지하고 확정적으로 계약상 적절한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후 즉각적인 계약철회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거나 또는 PILZ 에 의한 중대하지 않은 직무태만의 경우, 고객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고객에게 계약철회권을 부여하는 상황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상당한 책임을 지야 하는 경우 또는 고객의 인수불이행 기간 동안 PILZ 에게 책임이 없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계약철회는 배제됩니다.

(6) 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보상 또는 배상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본 일반거래조건 제 16 조를 전제로 합니다.

11. 인수 불이행/인수지연

(1) 고객이 인수를 불이행하거나 기타 협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PILZ 는 추가 비용을 포함하여 발생한 손실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도물의 우발적인 손실 및 악화의 위험은 인수가 지연된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2)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인도물의 인도 또는 출하가 지연된 경우, PILZ 는 인도물의 인도 또는 출하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통보가 전달된 날의 익일 첫째 날부터 기산하여 그 후속하는 각 월 또는 월의 일부에 대해 총 청구금액의 월 0.5% 이상의 비율로 보란료로 청구합니다. 고객은 실제 손실 금액이 그 보다 적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PILZ 는 실제 손실 금액이 그 보다 크다는 사실을 입증할 권리를 가집니다.

(3) PILZ 는 고객에게 통보한 적절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계약을 철회하거나 인도물을 다른 곳에 공급하거나 또는 적절한 연장 기간을 적용한 후에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인도물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12. 하자의 통지

(1) 고객은 인도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인도물을 검사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소유권 하자 또는 중대한 하자, 인도물에 PILZ 가 보증할 만한 속성의 부재 및 조과 수량 인도, 부족 수량 인도 또는 오송 인도물(하자 - 그러한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 대한 통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첫번째 문장에 명시된 검사기간 종료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본 일반거래조건 제 12.1 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하자에 대한 통지도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나, 발견 후 14 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의 하자 통지에는 특정 하자의 상세한 내역과 당해 개별 건의 상세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본 일반거래조건 제 12.1 항 및 제 12.2 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하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PILZ 에 대한 일체의 보증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13.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증

[BKL NOTE: 영문본 상 본 조의 GUARANTEE 라는 용어가 전부 WARRANTY 로 변경되었습니다. 제품 하자의 보증이라는 취지에서 GUARANTEE 와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달리 용어를 변경하지는 않았습니.]

(1) 하자가 있는 경우 - 본 일반거래조건 제 14 조(소유권 하자)의 적용을 받는 소유권 하자를 제외함 - 본 일반거래조건 제 12 조에 따라 적절한 기간 내에 통지한 하자에 대하여 PILZ 가 제공하는 보증은 PILZ 의 재량에 따라 하자 제거(하자의 시정)나 교체를 통한 시정 조치에 국한됩니다. 단, 고객은 당해 하자가 위험 이전 시점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고객은 PILZ 와 협의하여 당해 하자를 시정하거나 인도물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인도물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PILZ 는 3 회까지 시정 작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의 이행장소는 인도 장소입니다. 이러한 조건의 PILZ 가 시정조치로 교체를 선택하고 교체될 인도물에 PILZ 에게 인도될 수 없는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PILZ 가 인도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시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수리/서비스 계약이 없는 경우, 고객은 인도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것이 인도물의 사용목적을 변경한 것이 아닌 한, 인도물의 실제 사용지에서의 시정조치 이행으로 인하여 증가한 운송, 출장 및 숙박 비용과 시정조치로부터 발생한 기타 증가비용을 PILZ 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BKL NOTE: '시정조치의 이행장소는 인도장소입니다'라는 추가 문구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제 4.(2)조의 추가 내용과 순환논리에서 어떤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편, 본 조항의 다른 업데이트 내용에 따르면, 인도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시정조치 시 대체되는 비용 분담의 범위가 수정되었습니다.]

(3) 시정조치나 교체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PILZ 는 시정하거나 인도물을 교체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PILZ 는 교체 또는 교환 인도의 예상 비용이 당해 인도물의 계약 구매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일체의 시정조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BKL NOTE: 수정 전 규정에서는 시정조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구매대금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귀사가 시정 또는 교체를 거부할 수 있었으나, 업데이트 된 내용에 따르면, 시정조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구매대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시정이나 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시정이나 교체 거부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거부 기준이 높아져 고객에게 유리해졌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시정조치를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여전히 약관규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증에 의거 교체된 부품의 재산권은 PILZ 가 보유합니다.

(5) 하자에 대한 시정 조치가 실패한 경우 - 즉, PILZ 가 PILZ 에 부여된 시정 조치를 위한 적절한 기한을 초과하거나, 시정 작업을 2 회 시도하거나 2 회 교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하자가 시정되지 않은 경우, PILZ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나 교체를 거부하거나 또는 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고객에게 시정 작업이 부당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또는 관련 법률상 고객이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필요 없이 손해배상이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거나 PILZ 가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고객은 시정조치나 교체에 갈음하여 계약철회 및 대금인하와 같은 법률상의 보상책 뿐만 아니라 보상 또는 비용의 배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상은 배상은 본 일반거래조건 제 16 조의 틀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6) 계약 위반이 경미한 경우 특히, 경미한 하자의 경우, 고객은 계약 철회권을 갖지 않습니다.

(7) 단순히 경미한 하자인 경우, 이행에 갈음한 보상은 구매대금과 하자 있는 인도물의 가치 사이의 차액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8) 제 3 자 제품의 경우, PILZ 가 제공한 보증은 PILZ 가 제 3 자 제품의 제조업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것으로 국한됩니다. 고객이 제 3 자 제품의 제조업체를 상대로 보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PILZ 는 본 일반거래조건의 틀 안에서 보증을 제공합니다. 제 3 자 제품의 제조업체가 제공한 보증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9) 하자 통지가 부당하게 발행된 경우, PILZ 는 고객이 고객의 귀책에 해당하는 정황이 당해 하자를 야기한 것으로 과실에 의해 오만한 경우라면, PILZ 가 부담한 비용의 배상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고객이 설치 요령을 충분히 설명 받지 못한 경우 PILZ 의 유일한 의무는 결함 없는 설치 요령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설치 요령의 결함이 부 적절한 설치를 야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1) 일반적으로, PILZ 가 제조하거나 또는 특정한 부품 이외의 부품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납품된 목적물에 장착된 경우 PILZ 의 책임은 배제됩니다. 고객은 그러한 변경이 목적물에 하자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12) PILZ 는 고객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설치 작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은 설치가 하자 없이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14. 소유권 하자에 대한 보증

(1) PILZ 는 인도지 국가에서 고객이 계약상 합의한 인도물의 용도가 제 3 자 권리와 상충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소유권 하자가 있는 경우, 즉 PILZ 가 인도하고 계약상 합의한 방식으로 사용된 인도물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 3 자가 고객을 상대로 정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본 일반거래조건 제 12 조에 따라 하자 통지가 제공된다면, PILZ 는 PILZ 의 재량에 따라 고객을 위하여 당해 인도물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확보하거나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도물을 변경하거나 교환할 것을 보증합니다. PILZ 는 관련 인도물을 계약상 규정을 충족하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으나, 이는 고객에게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PILZ 가 적절한 조건으로 그와 같이 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계약철회 및 대금인하와 같은 법률상 권리뿐만 아니라 보상 또는 비용의 배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상 또는 비용을 배상할 PILZ 의 의무는 본 일반거래조건 제 16 조(보상)의 틀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제 3 자가 인도물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예를 들면, 저작권 또는 특허권)를 주장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PILZ 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PILZ 에게 제 3 자와의 분쟁을 직접 수행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PILZ 는 재량에 따라 고객과 협의하여 제 3 자의 청구에 이익을 제기하거나 응하여야 합니다. 단, PILZ 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한 경우, 고객은 PILZ 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제 3 자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며, PILZ 는 자신의 비용으로 제 3 자의 청구에 이익을 제기하고 이러한 청구에 이익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으로부터 고객을 면제하여야 합니다. 단, 이러한 비용은 고객이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예를 들면, 인도물을 계약상 합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고객이 당해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합당한 사유로 인도물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 고객은 사용중단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침해에 인정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제 3 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고객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 고객의 청구는 배제됩니다. 그러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침해가 고객이 특별한 조건으로 PILZ 에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도물을 사용함(예를 들면, 인도물을 고객이 변경하거나 PILZ 가 공급하지 않은 물품과 함께 사용된 경우)으로 인한 경우에도 고객의 청구는 배제됩니다.

(4) 소유권 하자에 기초한 기타 모든 청구는 배제됩니다.

15. 보상

(1) 본 규정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비용 및 일시이익과 같은 간접 손실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여 이러한 종류의 손실에 대한 고객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배제됩니다. 이는 특히 계약관계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청구에 적용됩니다. PILZ 가 협력업체 또는 대리인을 활용한 경우에도 책임배제가 적용됩니다.

(2) 본 일반거래조건 제 16.1 항과 달리, PILZ 는 PILZ 가 간부 직원 또는 협력업체나 대리인을 활용한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경우를 포함함) 법적 근거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책임을 집니다.

- PILZ 측의 과실 또는 고의가 있는 경우;
- PILZ 가 사기로 하자를 은폐하였거나 당해 목적물의 속성에 대한 보증을 인수한 경우;
- 인명, 신체 또는 건강과 관련된 부상이 PILZ 의 책임이라는 사유로 인한 경우;
- PILZ 가 책임있는 사유로 중대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
 - 당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직무태만의 경우; 또는
 - 의무 이행시 우선 당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이 가능하게 되며, 고객이 통상적으로 그 의무가 준수될 것으로 믿고 의존할 권리를 가지는 의무 위반의 경우 (=중대한 계약상 의무).

(3) 단순 과실에 의한 본 일반거래조건 제 16.2(d)항 - 중대한 계약상 의무의 위반 - 인 경우 PILZ 의 책임은 예견가능한 통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제한됩니다.

(4) 제조물 책임 관련 법률에 따른 청구에 대해서는 면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규정은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습니다.

16. 중대한 하자 및 소유권 하자로 인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 하자에 대한 모든 청구권은, 개별 사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한, 인도물의 이전 또는 만약 승낙이 있었다면 인도물 승낙 시점부터 12 개월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관계법령 상 그 보다 장기의 시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시효를 적용합니다.
- 제조물 책임 관계 법률 및 시효의 연장, 기간의 연장 및 제기산에 대한 법정 조항에 따른 청구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고품이 인도된 경우 보증은 배제됩니다.

[BKL NOTE: 업데이트 된 부분에 따르면, 기존의 제 15 조에서 간략히 규정하고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분리하여 규정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시효에 관한 규정은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강행규정이므로 우리나라 법 상 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계산될 것입니다. 또한 본 일반거래조건은 다수의 거래 당사자에게 적용될 계획이 있는 '약관'의 성격이 있는 관계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이에 따르면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제 11 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 6 조), 고객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단기로 규정한 제 16 조는 무효로 판단되어, 결국 우리나라법상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조항의 취지는 결국 단기의 소멸시효를 두되 법률상 장기로 두어야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지에 맞게 위와 같이 수정하여 무효가능성은 배제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7. 취소비용

고객이 자신이 요청한 주문을 정당한 계약상 또는 법상의 근거 없이 철회한 경우, PILZ 는 - 우선 고객이 이 상황을 시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간은 제공받은 경우 -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일일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판매 대금의 10%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실제 발생한 손실이 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추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실제 손실이 그보다 적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18. 소유권 유보

(1) 법적 근거를 불문하고 당해 계약 체결 시 존재한 PILZ 의 일체의 매출채권이 전액 변제될 때까지 PILZ 가 모든 인도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PILZ 가 고객의 이익을 위한 이행으로 인하여 수표 또는 환어음을 수락한 경우, 그러한 채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PILZ 는 모든 인도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정된 매출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오픈 계정(open account)에 개별 매출채권을 추가하고 잔고를 차감하고 인수하는 것은 소유권 유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고객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인도물을 작업하고 가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PILZ 측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PILZ 를 대리하여 인도물의 작업활동 및 가공활동을 수행합니다. 인도물이 PILZ 가 공급하지 않은 다른 물품과 가공, 결합, 혼합 또는 조합되는 경우 그러한 가공, 결합, 혼합 또는 조합 시점에서 달리 가공된 물품의 가격과 인도물의 가격을 대조하여 그 비율만큼 신제품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고객이 법의 적용결과 신제품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고객은 현재로서는 전술한 비율만큼 신제품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PILZ 에 부여하고, 이 신제품을 PILZ 를 대리하여 무상으로 보관할 것을 약정합니다.

(3) 고객이 단독으로 또는 PILZ 소유가 아닌 물품과 함께 본 일반거래조건 제 18.2 항에 의거 공동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인도물 또는 물품을 처분하는 경우, 고객은 현재로서 인도물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재판매로부터 발생한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대권리를 PILZ 에 이전합니다. PILZ 는 그러한 이전을 수락합니다. 처분한 물품이 PILZ 와 공동 소유인 경우, 매출채권의 이전은 공동 소유권 중 PILZ 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확대됩니다. PILZ 가 취소권을 보유하는 경우 PILZ 는 고객에게 PILZ 에게 이전된 매출채권을 회수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고객이 PILZ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PILZ 에 이전된 매출채권의 채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또한 채무자에게 그러한 채권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PILZ 도 역시 관련 채무자에게 이전 사실을 공개하고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PILZ 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이 계약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경우, 및 특히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PILZ 는 대금지급을 독촉하고 유예기간을 지정한 후에 인도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인도물을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PILZ 가 소유권 유보를 주장하거나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결권을 설정하는 경우 어떠한 것도 계약의 철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현재로서 PILZ 가 지정한 자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인도물이 소재하는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동의함을 선언합니다.

(5) 고객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인도물을 재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그러한 권리를 수권받았으며, 본 일반거래조건 제 18.3 항에 의거 PILZ 에게 이전된 매출채권은 전실되게 PILZ 로 이전된다는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고객은 인도물을 달리 처분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객은 인도물에 결권을 설정하거나 인도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고객은 소유권 유보 대상 물품에 대하여 제 3 자가 위한 집행조치 지체 없이 PILZ 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러한 집행조치를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문서를 이전하여야 한다.

(7) 고객은 소유권 유보 대상인 모든 물품에 대하여 특허, 화제 및 도안에 대비하여 고객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재로서 소유권 유보 대상인 물품에 대해 고객의 각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PILZ 에게 이전됩니다. PILZ 는 이로써 보험금지급 청구권 이전을 수락합니다.

(8) PILZ 는 PILZ 에 제공된 모든 담보의 가격이 PILZ 의 매출채권을 20% 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와 같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PILZ 에 제공된 담보를 반환하거나 해제할 의무가 있고 기꺼이 그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9) 고객이 한국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인도지 국가에서 유효한 판매 및 인도 조건에 기재된 바에 따라 PILZ 의 소유권 유보(개선 및 확장된 형태를 포함함)를 위하여 법률상 요구 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9. 전자제품 폐기 의무의 이전

PILZ 는 판매법령 상 전기전자제품의 폐기에 관한 생산자로서의 의무를 고객에게 이전합니다. 고객은 PILZ 를 수거의무 및 폐기의무로부터 면제합니다. 고객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 3 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로부터 PILZ 를 면제합니다. 고객이 전기전자제품의 절유 또는 소유를 제 3 자에게 인도할 경우, 고객은 수거의무를 구매자에게 이전합니다.

[BK. NOTE: 독일법상 수거 및 폐기의무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이른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있습니다만, 이는 현재로서는 제한적 물품과 일부 전지류 등(동법 시행령 제 18 조) 에 적용될 뿐, 전기전자제품 전반에 적용되는 법규는 없으며 또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역설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역분석을 하지 아니한다. [BK. NOTE: 동 제2항에는 원칙적으로 제품 자체의 수거 및 폐기의무가 없습니다. 이 조항은 국내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GTC 의 통일성 측면에서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방안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20. 비밀유지

(1) 고객은 기밀정보, 즉 일리스트레이션, 도면, 초안, 모델, 샘플, 계산, 추정, 기타 문서 또는 물품 등 PILZ 와의 계약관계와 관련하여 지득하게 된 일체의 자료와 정보("기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기밀정보를 PILZ 와 체결한 당해 계약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PILZ 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 자들에게 유출하거나 달리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고객은 인도물에 채화된 작동 내지 영업상 비밀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물을 모니터링, 조사, 디컴파일 또는 검사하는 등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역설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역분석을 하지 아니한다. [BK. NOTE: 동 제2항에는 원칙적으로 제품 자체의 수거 및 폐기의무가 없습니다. 이 조항은 국내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GTC 의 통일성 측면에서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방안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기밀정보를 제 3 자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기밀정보를 취급하면서 기술이는 수준과 동일한 수준이나 상당한 주의 수준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객은 그 직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기밀정보 보호의무를 부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은 그러한 비밀유지계약 위반 주거나 위반 사실을 인지하거나 또는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PILZ 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기밀정보 보호 의무는 고객이 다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PILZ 가 제공하기 전에 고객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
- 고객이 그 기밀정보를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수령하였고, 고객이 해당 제3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일반에게 공개되거나 이미 공개된 경우;
- PILZ 의 공개와 관계없이 고객이 이미 개발하였거나 개발한 경우.

(4) PILZ 는 기밀정보에 대한 일체의 권리(저작권, 산업재산권 및 특허, 실용신안, 배치설계권, 의장 및 브랜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와 기밀정보를 사용 가능하게 되거나 포함하는 물품(문서, 디스크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가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PILZ 의 기밀정보에 대한 소유, 라이선스, 복제, 사용 또는 기타 권리는 당해 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PILZ 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또는 상업/영업 비밀로 보호를 받는 물품 또는 문서의 경우, 고객은 제 3 자에게 구체적인 사용방법이 허용되지 않는 한, PILZ 가 명시적으로 제시한 조건하에서만 당해 물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PILZ 가 요청하는 경우, 고객은 PILZ 로부터 수령한 기밀정보 일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기밀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PILZ 에 무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고객은 그러한 문서나 물품을 보유할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구속력 있는 법정 의무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는 사본에 대해서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기밀정보는 요청 즉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6) 고객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손실 및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 합니다.

(7)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는 당해 계약 종료 후 3 년간 적용됩니다.

21. 최종 조항

(1) 고객은 PILZ 가 계약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및 처리할 것이며 이러한 개인정보는 그러한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제 3 자에게 이전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2) PILZ 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본 일반거래조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PILZ 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그러한 변경은 고객에게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고객이 변경 통지 수령 후 4 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계약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PILZ 는 변경 통지를 통하여 고객에게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의 효과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3) PILZ 는 하나 이상의 제 3 자에게 본 계약상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4) 1980 년 4 월 11 일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법들이 적용됩니다.

(5) 본 계약 관계에 따른 의무의 이행 장소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PILZ 의 소재지로 정합니다.

(6) 고객이 사업자, 공공단체 또는 정부기관인 경우,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PILZ 의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속관할로 합니다. 이는 고객이 한국에 일반적인 관할 법원이 없는 경우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영구적/일시적 주소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에서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